#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49 발의연월일: 2022. 9. 14.

발 의 자:전용기·김수흥·김영배

김홍걸 • 민홍철 • 박광온

박성준 • 신정훈 • 이성만

이원욱 • 최혜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통계청 'MZ세대의 생활환경 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중월세로 거주 중인 청년이 55.2%에 달한다고 발표함. 정부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포함한 서민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제도'를 시행 중이며, 제도 도입 이후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 높은 정책임.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이 물가 상승과 더불어 금리 인상기이며, 한편으로는 깡통 전세 우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우려로 월세로 주택수요가 몰리면서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2년 5월 전국의 월세 가격 상승 폭은 0.16%로 2019년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추세임.

이에,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100

분의 10에서 100분의 12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자는 100분의 1 2에서 100분의 20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 제3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을 "12"로, "12]"를 "20]"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3항 본문 중 "10"을 "12"로, "12)"를 "2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 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	
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	
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	
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	
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	
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u>12</u>
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	
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	
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한다.

#### ②·③ (생 략)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② (생략)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 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 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 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 른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 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 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 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

<u>20]</u>
<u>.</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
료비 등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12</u>

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 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 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 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 ⑦ (생 략)

<u>20)</u>
④ ~ ⑦ (현행과 같음)